

백혈병을 전자기장의 폭로로 인한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

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 1996.10.22. 선고 96구7245 판결

[사건 명]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[당사자]

원고 김○○,
피고 근로복지공단

[판시사항]

백혈병을 전자기장의 폭로로 인한 업무상의
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

[주문]

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소송비용은 원고
의 부담으로 한다.

[판결요지]

전자기장에 노출되면 백혈병 등 암이 발병
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일부 의학적인 연구보
고가 있으나 현재까지 검증이 끝나지 않은 학
문적 가설에 지나지 않아 전자기장과 백혈병
등 암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. 백혈
병은 현대 의학상 아직 발병원인이 밝혀지지
않은 것이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백혈병을 급
속하게 악화시키거나 백혈병 환자의 생명을
단축시킨다거나 합병증을 유발한다고 단정할
수도 없으므로 백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
정할 수 없다.

[참조판례]

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9누2004 판결

[이유]

1. 처분의 경위

갑제1호증, 제2, 3, 4호증의 각 1, 2, 제6호
증, 을제1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
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
수 있다.

가. 원고의 남편이던 소외 망 김○○은
1969. 11. 1. 체신부 제주전신전화국 기공수로
임용되어 전화국 근무를 시작한 아래 전화국
에서 계속 근무하여 오다가, 1982. 1. 1. 한국
전기통신공사가 발족됨에 따라 한국전기통신
공사에 입사하여 전주전신전화국 기술전력파
에 근무하던 중 1995. 4. 18. 두통증세가 악화
되어 예수병원에 입원하여 후천성백혈병, 뇌
출혈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5.

4. 퇴원하던 같은 날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명예퇴직하였는데, 같은 달 5. 선행사인 급성 단핵구성 백혈병, 중간선행사인 뇌출혈, 직접사인 심장정지로 사망하였다.

나. 위 망 김○○이 1995. 5. 3. 피고에게 위 후천성 백혈병과 뇌출혈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, 피고는 1995. 8. 3. 한국전기통신공사 전주전화국장을 통하여 유족인 원고에게 위 망인의 백혈병이 전자기장의 폭로로 인한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작업환경이 직접적인 백혈병 발병인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(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)을 하였다.

2. 처분의 적법여부

1) 당사자의 주장

원고는, 위 망인이 1969. 11. 1.부터 퇴직시까지 2년간(1992. 5. 12.부터 1994. 5. 29.까지) 노동조합 지부장을 지낸 기간을 제외하고 25년 이상 전화국 기술부 전력실에서 전자기장의 폭로를 받으며 근무하여 왔고, 2년간의 노조지부장을 지낸 뒤 1994. 5. 30. 원직에 복귀하여 빠르게 발전하는 통신기술과 새로운 시설에 적응하려고 육체적으로 과로를 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왔는데, 국내외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자기장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백혈병 등 암에 걸릴 위험이 두배 이상이 된다는 것이므로 위 망인의 백혈병은 업무상 전자기장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되었다고 볼

것이고, 설령 전자기장에 대한 장기간 노출이 백혈병을 유발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발병후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되었으므로, 위 망인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어서, 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백혈병의 발병원인은 대부분 원인 불명이며 전자기장과 백혈병과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일부 역학연구가 있으나 현재까지는 그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으며 실험연구에서도 용량반응관계가 미흡하며 발암성 기전이 밝혀지지 않아서, 전자기장이 백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, 위 질병이 업무상의 사유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으므로,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.

2) 사실관계

(1) 앞서 든 증거들, 강제6호증, 제7호증의 1 내지 6, 제8호증, 제9호증의 1 내지 6, 제10호증의 1, 2, 을제2호증의 1, 2의 각 기재와 증인 고○○의 증언, 당원의 예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, 위 망인은 1969. 11. 1. 이후 퇴직일인 1995. 5. 4.까지 2년간의 노동조합 전임 근무기간을 제외하고는 전 기간 동안 전화국 기술부 전력과에서 전기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전자기장에 고폭로되어 왔고, 위 상병 중 뇌출혈은 백

혈병에 의한 혈소판 감소증에 따른 2차적인 현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(2) 그러나, 강제5호증, 제11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자기장에 노출되면 백혈병 등 암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일부의 학적인 연구보고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을제2호증의 1, 2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위 연구보고들은 현재까지 검증이 끝나지 않은 학문적 가설에 지나지 않아 위 보고들만으로 전자기장과 백혈병 등 암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.

(3) 그리고 위 망인의 백혈병 발병시기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위 백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.

3) 당원의 판단

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백혈병은

현대 의학상 아직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백혈병을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백혈병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킨다거나 합병증을 유발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(대법원 1989. 9. 26. 선고89누2004 판결), 위 망인의 백혈병이 업무상 전자기장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하였다고 할 수 없고,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위 백혈병을 악화시켰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, 위 망인의 백혈병이 업무상의 재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. 그러므로,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☞